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9.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채재묵 )

가. 제안이유

- 부조리 신고자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이 미비된 우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2011년 청렴도 1등 영등포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부조리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신고자의 보호(안 제11조)

- 신고 행위로 신분상·근무 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 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

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과 심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내부고발자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근무 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 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를 근거로 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으로 법 체제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1 호
----------	--------

제출연월일 : 2011.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부조리 신고자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이 미비된 우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의무위반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2011년 청렴도 1등 영등포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세분화 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나. 신고 행위로 신분상, 근무 조건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사 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과 심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자 외에 신고에 관한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 신설(안 제11조)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기초하여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총무과와 합의 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11. 8. 11 ~ 8. 31(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필

3) 규제심사: 검토 필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는데”를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기여함을 그”를 “기여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를 ““공무원 등”이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조리”라 함은”을 ““부조리”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를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3년”을 “3년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을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처리를 위하여”를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결정 하여야”를 “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급에 대한 결정은”을 “지급여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 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에 대하여”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나 신고 된”을 “넘겨 신고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환수하고”를 “환수하며,”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신고자 등의 보호)”를 “(신고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 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의 제목 “(피신고자에 대한조치)”를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의거”를 “따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 조 리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근 무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와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li> <li>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p>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영등포구 ----- -----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 규정함 ----- ----- 기여하는 것을 -----.</p>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등”이란 영등포구 (이하 “구”라 한다) ----- -----.</li> <li>2. “부조리”란 ----- ----- -----.</li> </ol> <p>제3조(지급대상) ----- ----- ----- 하었을 때, 이를</p>

신고한 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  
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  
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  
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  
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

신고하여 -----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 따른  
----- 3년이 ----  
-----.

제5조(신고방법) ① ----- 따  
른-----  
-----.

②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  
라-----.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② -----  
-----  
-----

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범위

③

범위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따른

지급여부는

②

따른

1. 2. (현행과 같음)

③

반영하여야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  
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  
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  
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  
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 된  
사항
3. (생략)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  
항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  
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방법은 지  
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 범위 -----  
-----.

② ----- 따른 -----  
-----  
-----.

③ -----  
----- 해당 -----  
-----.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  
----- 신고 -----  
-----.

1. -----  
----- 신고된 -----
2. ----- 넘겨 신고된 -----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10조(환수) -----  
-----  
----- 환수하며, -----  
-----  
----- 따른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구청장은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 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

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따라 -----  
-----.